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6층 이상 부분에 대하여 실외소음 기준 대신 실내소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 면적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소음배출시설로부터 해당 시설이 설치된 공장의 경계까지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경우 공동주택 배치에 요구되는 이격거리를 완화하며, 필수 주민공동시설인 작은 도서관은 인근에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단지 내 공공도서관 설치가 계획된 경우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심내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없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을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는 제외한다.

1. 제1항제2호의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 저장 압력 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2. 제1항제1호라목의 시설인 경우로서 해당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등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리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경계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 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

가. 주택단지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300미터 이내에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도서관이 있는 경우

나.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에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설치가 계획된 경우

다.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방지대책 수립 시 기준 적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제1호에 따른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의 신청

제3조(소음발생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 제한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제1호에 따른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의 신청

제4조(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제1호에 따른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의 신청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사	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	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인	-----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방음림(소음	-----		
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	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	-----		
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인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	-----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조에 따른 <u>도시지역(주택단지</u>	-----		
<u>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u>	<u>우로 한정한다)</u> 또는 「소음·	----- <u>도시지역</u> -----		
<u>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u>	<u>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u>	-----		
<u>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u>	<u>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u>	-----		
<u>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u>	<u>을 적용하지 않는다.</u>	-----		
1.·2. (생략)		-----		
② ~ ⑥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유치원·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는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 설>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

-----, <단서 삭제>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

② (생 략)
<신 설>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 ②
 (생 략)

동주택등을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는 제외한다.

1. 제1항제2호의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 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 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2. 제1항제1호라목의 시설인 경우로서 해당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등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경우

③ (현행 2항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리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경계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③ -----

-----.

<단서 삭제>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 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

가. 주택단지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300미터 이내에

④ ~ ⑦ (생략)	<u>「도서관법」 제4조 제2항 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도서관이 있는 경우</u> <u>나.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에 「도서관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설치가 계획된 경우</u> <u>3.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u> <u>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연 락 처	044-201-3367